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5. 13 선고 2020가단10146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

담당변호사 정성원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

담당변호사 배준성

변 론 종 결 2021. 3. 25.

판 결 선 고 2021. 5. 13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아파트’)에 관하여 2018. 8. 2. 체결된
증여계약을 3,35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연

12%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,35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원리금 합계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관계

가. 원고는 소외 C에게 돈을 빌려 준 채권자이고, 피고는 위 C과 혼인하여 1994. 10. 27.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8. 11. 22. 협의이혼한 사람이다.

나. 원고는 2017. 4. 27. C에게 1,200만 원을 이자 월 2%(연 24%), 변제기 2017. 10. 26.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그와 돈 거래를 하였는데, C은 원고에게 3회에 걸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와 별도로 9회에 걸쳐(이 사건 소 제기 전 기준) 사실확인서 또는 이행각서도 작성하여 주었다.

다. C이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작성해 준 2019. 3. 22.자 ‘확인 및 이행각서’에는 ‘원고로부터 2017. 4. 27., 2017. 6. 13., 2017. 9. 27. 세 차례에 걸쳐 3,500만 원을 약정이자율 연 24% 조건으로 빌렸는데, 2019. 4. 26., 2019. 5. 26., 2019. 6. 26. 세 차례에 걸쳐 각 1,000만 원씩 분할변제하고 이자는 별도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되,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사행행위로 접수하여도 민·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’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.

라. 한편 C은 위 다.항의 ‘확인 및 이행각서’를 작성하기 앞선 2018. 8. 2. 남편인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후(이하 ‘이 사건 증여’) 다음날인 2018. 8. 3.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별도 표시가 없는 한 같음)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사안의 개요

이 사건은 C의 채권자인 원고가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가 민법 제406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채권 범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.

3.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항변 요지

원고는 2018. 9. 28. C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작성·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미 피고에게 이전되어 사해행위로서의 취소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,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적법한 소이다.

나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가 C의 사해행위와 그 취소원인을 알게 된 것은 피고가 주장하는 2018. 9. 28.자 사실확인서를 작성·교부받았을 때가 아니고 2019. 2. 27.경 사실확인서를 작성·교부받았을 때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이다.

다. 제척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

1)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은 “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”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“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있다.

2) 그런데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‘취소원인을 안 날’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,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지만,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

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(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).

3)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C이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에게 작성·교부한 사실확인서 또는 이행각서 중 ‘변제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겠다’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 여럿 포함되어 있고, 특히 2018. 9. 28.자 사실확인서(갑 제2호증의 7, 이하 ‘이 사건 사실확인서’)에는 “나 C은 2017. 4. 27. A씨로부터 … (중략) … 약정하면서 본인 소유 아파트 강동구 D에 있는 E아파트 F동 G호 … (중략) … 에 근저당, 가압류, 가등기, 추가 대출시 꼭 A씨 허락을 득한 후 쓰거나 A 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만약 임의대로 집에 근저당, 가압류, 가등기,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민·형사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나 지키지 못하고 가등기 추가 대출을 한 후 남편 B에게 명의 변경함을 인정합니다. … (중략) … 나 C이 남편 모르게 대출을 받아 본인 소유 집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남편이 화가 나서 자기 앞으로 명의 변경한 것입니다.”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을 당시 C의 재산 중 담보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이 이 사건 아파트라는 사실, 그리고 그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이전한 사실을 모두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.

따라서 위 2)항의 법리에 의할 때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위 2018. 9. 28.이라 할 것이고, 결국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20. 1. 10.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.

4)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·교부 당시 C이 ‘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허위표시로서 등기부상 소유 명의만을 형식적으로 옮겨놓은 것이다’라고 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취지이나, 앞서 본 바와 같이 돈을 빌려줄 때마다 공정증서를 교부받고 9차례에 걸쳐 사실확인서 또는 이행각서까지 작성하여 채권보전에 최선을 다한 원고가 위와 같은 C의 말만을 믿어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가 여전히 공동담보로서 기능한다고 인식하였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설득력이 떨어지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,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.

판사 윤상도

별지

부동산의 표시

서울특별시 강동구 H에 있는 E아파트

F동

철근콘크리트구조

경량철골경사지붕 25층 공동주택(아파트)

1층	193.01㎡
2층	186.97㎡
3층	336.55㎡
4층	336.55㎡
5층	336.55㎡
6층	336.55㎡
7층	336.55㎡
8층	336.55㎡
9층	336.55㎡
10층	336.55㎡
11층	336.55㎡
12층	336.55㎡
13층	336.55㎡
14층	336.55㎡
15층	336.55㎡
16층	336.55㎡
17층	336.55㎡
18층	336.55㎡
19층	336.55㎡
20층	336.55㎡
21층	336.55㎡
22층	336.55㎡
23층	336.55㎡
24층	336.55㎡
25층	336.55㎡

표제부 제21층 G호 철근콘크리트조 133.97㎡

대지권의 표시 144209분의 63.7362. 끝.